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7호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한밭교육박물관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금지 사유, 행위제한 사유, 전시물 기증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밭교육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매주 월요일,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

(2)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정하되 한밭교육박물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을 정함.

나. 관람금지 사유, 행위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등의 경우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함.
- (2) 지정 장소 외의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한밭교육박물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한밭교육박물관장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다. 한밭교육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1)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진위 여부 판단 및 가격 평가,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소장유물의 가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밭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를 설치함.
- (2) 한밭교육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밭교육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역사학·교육사학·민속학 및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등 중에서 한밭교육박물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라. 자료 기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1) 한밭교육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음을 정함.

- (2) 한밭교육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한 자에 대하여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밖에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bokdung@edurang.net)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한밭교육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관람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 장소 외의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에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감정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진위 여부 판단 및 가격 평가
2.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소장유물의 가치 평가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역사학, 교육사학, 민속학 및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를 전공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자에 대하여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밖에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한밭교육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감정위원회로 본다.

관 계 법 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